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단23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무늬, 이창화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08,47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계약 모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회사(원수사)와 보험모집에 따른 수당계약을 체결하고, 모집된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보험판매실적, 유지율에 따라 계산함)을 원수사들(C, D, E 등 19개의 생명보험회사와 F, G, H 등 13개의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대리점(GA)이다.

나. I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험모집인으로 원수사 중의 하나인 G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을 통해 원고의 K사업부(대구지부)의 총괄대표인 L을 소개받아 2018. 5.경부터 원고 소속의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모집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대리점인 M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L의 허락을 받아 우선 J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빌려 보험영업을 시작하였고, 또 기존 보험대리점에서 팀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이직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내근 설계사 직원들을 뽑아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I은 2018. 6.경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피고에게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를 내근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2018. 6. 말경 피고에게 보험설계사 코드가 부여되자 그 코드를 이용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였고, 2018. 10.경에는 자신의 동생 명의로 원고의 'N대리점'(이하 '이 사건 보험지점'이라 함)을 개설한 다음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으며, 주로 직원으로 채용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하여 보험모집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I의 보험모집 영업을 돕기 위해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지점의 고문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2018. 7. 30. I에게 영업을 위해 3,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원고의 직원들도 I과 금전 거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7. 피고와 FC1)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나

2019. 2. 8.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가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해 와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수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만일 피고의 모집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원고가 우선 원수사에 환수금을 지급한 다음 그 환수금 상당의 금액을 피고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의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제6조(이하 ‘이 사건 환수약정’이라 함)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에 대한 실적수수료의 환수는 현재의 원수사인 보험회사의 환수규정을 준용하며, 청약철회, 해약 또는 해지, 미유지로 인한 실효 등이 주된 환수사유로 되어 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지점에서 주로 내근직 직원으로 근무면서 I 등이 모집해 온 보험계약을 최종 확인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전산에 등록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의 계좌에 원고로부터 수수료 등이 입금 되면 피고의 급여를 제외한 돈은 모두 I에게 송금하였다.

사. 원고가 2018. 6. 26.부터 2019. 2. 8.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급여 및 수수료 등은 합계 522,507,458원이고, 그 중 피고가 모집한 것으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총 222건(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는 합계 183,745,871원인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I의 모집활동으로 체결된 것이라 I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이 되어야 했으나, I이 소속을 변경하는 과정에 보험설계사 코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관계로 I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어 피고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게 된 것이었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의 총괄대표인 L이나 부장인 O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피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은 18,600,000원이고 이는 모두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아. 그런데, 이 사건 보험지점에 P이라는 보험설계사가 소속되어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 원수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수수료만을 노리고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이에 원고는 원수사에게 합계 183,745,871원을 반환해 준 다음, 이 사건 환수약정에 따른 피고의 수수료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해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47,269,824원을 환수받았고, 2019. 11. 5.부터 2020. 2. 10.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 1,567,575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통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 을제4호증 내지 을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L, O,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환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실효로 인하여 원고가 원수사에 환수당한 환수금 183,745,871원에서 원고가 이행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7,269,824원과 피고가 변제한 1,567,575원을 공제한 나머지 134,908,472원(=183,745,871원 - 47,269,824원 - 1,567,575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34,908,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K사업부 대표 L과 고문 J과의 합의를 기초로 I이 개설한 이 사건 보험지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되 매월 3,000,000원씩 급여를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직접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I이라고 주장한다.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보험지점의 내근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 피고가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원고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L, O,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직원과 I이 위촉계약의 형식을 취하자고 요청하여 그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I이 모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 및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의 계약임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는,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 등에서 피고의 급여 외는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수수료 등의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행하였는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이다. 이러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참조).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모집활동으로 인해 체결된 보험계약이 아니었지만 원고에게 피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수수료 등을 신청한 다음 피고의 계좌로 원고로부터 수수료 등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는 피고의 급여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I으로 하여금 처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취득한 돈이 급여 상당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I과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수수료 등에 관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4)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를 대부분 환수하였으므로, 나머지 7,554,722원(=2019. 5. 기준 최종 환수금 56,556,621원 - 이해보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47,434,824원 - 피고가 지급한 1,567,075원)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주장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5) 피고는, 원고가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9. 19. I과 3억 원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I으로부터 그의 아버지 소유의 대구 서구 Q건물 제3층 R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I이 3,000만 원을 지급하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으므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와 I 사이에 피고의 수수료 환수금 채무에 대해 모두 면제하거나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제9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I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의 이 사건 환수금 채무를 면제하였거나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의 성립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134,908,4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종호

1) Financial Consultant : 보험설계사

2)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사건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1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서 매도에 관한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소외2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소외2가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경우에 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사안이고, 대법원 2017. 6. 29. 선고2017다213838 판결은, 피고1이 1차계약 체결 직후인 2015. 2. 15.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2와 아들인 소외인이 피고1을 대신하여 2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2차계약이 체결된 당일 계약금 110,000,000원을 피고2에게 지급하였고, 피고2는 위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한 경우에 피고1은 위 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